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네트워크 2 차 공개토론회 결과보고서

학교상담법, 무엇을 법으로 세울 것인가

학생을 선별·분류하는 학교에서, 삶을 읽고 성장시키는 학교로

행사일시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저녁 7시~9시 이후
진행방식	Zoom 온라인 공개토론회
주제	학교상담법, 무엇을 법으로 세울 것인가
기록 성격	학교상담법 제정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 결과보고서
작성 근거	2026.05.22 1차 토론회 결과보고서, 2026.06.23 2차 토론회 녹취록(137분 12초), 2차 토론회 패널 참여 요청서

작성일: 2026년 6월 25일

1. 보고서 작성 목적

본 보고서는 2026 년 6 월 23 일 진행된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네트워크 2 차 공개토론회의 기획 취지, 실제 진행 내용, 패널 발언, 핵심 쟁점, 입법 조항화 방향, 토론 성과와 후속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1 차 토론회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학교 마음건강 정책의 문제를 시민 공론장에 올린 자리였다면, 2 차 토론회는 그 문제의식을 학교상담법의 조항과 절차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 준비 토론회였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단순한 행사 기록을 넘어, 향후 의원실 제안자료, 교육부 공개질의서, 학교상담법 초안 0.5 판, 입법 쟁점표, 시민연대 활동실적 자료의 기초 문서로 활용될 수 있다.

녹취록에는 자동 변환 과정에서 일부 인명과 용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문맥에 따라 조승연, 박미서 등 실제 발제자명과 정책 용어를 정리하여 표기하였다.

2. 1 차 토론회에서 2 차 토론회로 이어진 흐름

5 월 22 일 1 차 토론회는 “학생 마음건강 정책, 보호인가 관리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핵심은 실제 위기 학생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학생의 흔들림을 위험군·관심군·정신건강 관리 대상으로 번역하는 학교 정책의 방향을 다시 묻는 것이었다.

6 월 23 일 2 차 토론회는 이 문제의식을 “학교상담법, 무엇을 법으로 세울 것인가”라는 입법 질문으로 옮겼다. 토론의 초점은 검사 비판 자체에 머물지 않고, 학생 상담권, 내면 정보 보호, 실질적 동의, 공동 사례회의, 담임교사 보호, 상담교사 전문성, 의료기관 연계 기준, 연계 이후 학교의 사후지원 절차를 어떤 조항으로 세울 것인가로 확장되었다.

구분	1 차 토론회	2 차 토론회
핵심 질문	학생 마음건강 정책은 보호인가 관리인가	학교상담법은 무엇을 법으로 세워야 하는가
주요 초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전면 재검토와 학교의 병원화 문제	학생 상담권, 정보보호, 공동 사례회의, 의료기관 연계 기준의 조항화
토론 성격	시민 공론화와 문제 제기	입법 준비와 조문 방향 정리
정책 언어	위험군·관심군·검사·분류·연계에 대한 비판	낙인 없는 상담, 내면 정보 보호, 학교상담 우선 절차, 교원 보호
후속 과제	공개서명운동, 교육부 공개질의, 의원실 제안 필요	학교상담법 초안 0.5 판, 입법 쟁점표, 7 월 8 일 의원실 미팅 자료

3. 행사 개요

행사명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네트워크 학교상담법 제정을 위한 2 차 공개토론회
일시	2026년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9시 이후
진행 방식	Zoom 온라인 공개토론회
주제	학교상담법, 무엇을 법으로 세울 것인가 — 학생을 선별·분류하는 학교에서, 삶을 읽고 성장시키는 학교로
토론회 성격	학교상담법 초안 0.5 판 마련을 위한 입법 준비 토론회
핵심 질문	학생의 문제행동과 정서적 흔들림을 병명과 위험군으로 달기 전에, 학교가 학생의 삶과 마음을 읽고 회복을 설계하는 절차를 어떻게 법으로 세울 것인가
주최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네트워크
작성 근거	1 차 토론회 결과보고서, 2 차 토론회 녹취록, 2 차 토론회 패널 참여 요청서

4. 진행 및 참여자

토론회는 황상민 박사의 개회 및 취지 설명으로 시작되었다. 이어 학교 현장 교사, 학교상담 현장 상담사, 학부모, 법률가, 의학 전문가, WPI 상담사가 각각 학교상담법에 반영되어야 할 핵심 쟁점을 발제하였다.

구분	참여자	주요 역할 및 발언 초점
기조 및 진행	황상민 박사	2 차 토론회가 학교상담 필요성의 반복이 아니라 학교상담법 조항을 준비하는 입법 준비 토론회임을 제시. 학생을 병명으로 분류하는 학교에서 삶을 읽는 학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정리
학교 현장 발언	조승연 교사	유달리 사례와 공동 사례회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담임교사의 관찰, 교육적 개입, 법적 보호, 관리자 책임, 민원 분리의 필요성을 제안
학교상담 현장 발언	박미서 상담사	행동은 기록되지만 마음은 읽히지 않는 현실을 사례로 제시. 기록 이후 학생을 다시 이해하는 절차, 학생 설명권과 상담 기록 보호의 필요성을 제안

구분	참여자	주요 역할 및 발언 초점
학부모 발언	김수정 학부모	발달 속도가 다른 아이를 둔 부모의 두려움, 형식적 동의의 문제, 정보 이동 고지, 학부모를 민원인이 아니라 협력자로 세우는 절차를 제안
법률 발언	이수연 변호사	학생 상담권, 내면 정보 보호, 실질적 동의권, 열람·정정·삭제권, 검사 결과 사용 제한, 학교보건법과 학교상담법의 관계를 검토
의학 발언	김미정 원장	실제 위기 학생은 신속히 보호하되 비위기 학생은 학교 안 상담과 생활 맥락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제안. 의료기관 연계 기준을 제시
WPI 상담 발언	김혜원 상담사	괴물 세계 사례를 통해 문제행동 뒤의 세계, 공약법, 기준과 믿음을 읽는 학교상담의 필요성을 설명

5. 2 차 토론회의 핵심 문제의식

2 차 토론회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문제의식은 학교상담법이 “상담을 더 많이 하자”는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었다. 토론자들은 학교상담법이 학생, 교사, 상담교사, 관리자, 학부모, 의료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나누고 연결하는 법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 학교는 학생을 병명으로 분류하는 곳이 아니라 학생의 삶과 생활 장면을 먼저 듣고 읽는 곳이어야 한다.
- 문제행동은 곧바로 제거해야 할 위험 신호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학생이 말하지 못한 마음과 관계의 무너짐을 드러내는 언어일 수 있다.
- 담임교사는 치료자가 아니지만, 학생의 생활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핵심 관찰자이자 교육자이다.
- 상담교사는 검사 결과 처리자나 외부기관 연계 담당자로 축소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의 내면과 관계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담임교사와 협력하는 주체로 세워져야 한다.
- 상담 기록과 정서 정보는 행정 증빙이나 민원 대응 자료로 쉽게 전용되어서는 안 되며, 학생을 위한 목적에서 최소한으로 수집·보관·공유되어야 한다.
- 의료기관 연계는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비위기 학생에게는 학교 안 상담과 공동 사례회의가 먼저 작동해야 한다.
- 학부모는 학교와 대립하는 민원인이 아니라, 아이를 가장 오래 보아온 협력자로 절차 안에 참여해야 한다.

6. 주요 발언 요지

6-1. 황상민 박사: 문제 제기에서 입법 준비로

황상민 박사는 개회 발언에서 이번 2 차 토론회가 학교상담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를 반복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상담법을 실제 조항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함께 준비하는 자리라고 정리하였다. 그는 학교가 아이를 병명으로 분류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삶을 먼저 듣고 읽는 공간이어야 하며,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안전하게 협력하고, 학부모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며, 학생의 내면 정보와 상담 기록을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책임 있게 외부 전문기관과 연결하는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학교상담법의 방향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토론 말미에는 2 차 토론회 발언을 바탕으로 의원실과 교육부를 설득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을 준비하고, 7 월 8 일 의원실 1 차 미팅과 7 월 23 일 3 차 토론회를 통해 법안의 구체적 효과와 적용 가능성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후속 방향을 제시하였다.

6-2. 조승연 교사: 담임교사의 역할과 공동 사례회의

조승연 교사는 유달리 사례를 중심으로 학교상담법을 “문제 학생 관리법”이 아니라 “학교의 교육 기능을 회복하는 법”으로 설명하였다. 문제행동이 발생했을 때 현재 학교는 그 행동이 무엇을 말하는지 묻기보다 어떻게 멈출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담임교사를 학생의 생활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핵심 관찰자로 보았다. 담임교사는 학생의 말, 행동, 패턴, 관계 장면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책임 회피를 위한 기록이 아니라 마음을 해석하기 위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문제행동 직후에는 5 분 또는 10 분이라도 학생의 마음을 말로 바꾸는 시간이 필요하며, 담임 혼자 해석이 어려울 때에는 공동 사례회의를 요청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조승연 교사는 교사가 학생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다가 생기는 시행착오가 모두 교사 개인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교사의 판단을 위축시킨다고 보았다. 그래서 학교상담법에는 공동 사례회의와 관리자 보호 절차를 따랐을 때 담임교사의 교육적 상담, 행동 조정, 관계 회복 절차를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유달리 사례에서는 학생의 행동을 즉시 가정에 통보해 혼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학생과 함께 관계 회복의 방법을 찾고 유달리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게 하는 방식이 작동하였다. 그 결과 유달리는 학급 텃밭을 맡는 역할을 얻고, 친구들은 유달리를 두려운 아이가 아니라 장난기 있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친구로 다시 이해하게 되었다. 조승연 교사는 이 과정을 통해 학교상담법이 학생의 삶을 읽고 학교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정리하였다.

6-3. 박미서 상담사: 행동 기록 이후 마음을 다시 읽는 절차

박미서 상담사는 “행동은 기록되었지만 마음은 어디에서 읽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발제를 시작하였다. 학교는 수업 방해, 자해 의심, 병원 연계 같은 행동을 기록하지만, 그 기록이 아이를 돕는 자료로 남는 지, 아니면 아이를 규정하는 이름이 되는지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 사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수업 중 종이로 한쪽 눈을 가리고 교사를 바라보며 웃은 학생이 꾸중을 들은 뒤 화장실에서 이마를 벽에 부딪히고, 이후 “수업 방해”와 “자해 의심”으로 기록된 장

면이다. 두 번째 사례는 어머니와 사별하고 양육자가 바뀐 뒤 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욕설과 폭력 행동으로 다루어졌지만, 상담실에서는 “무서웠어요”라고 말한 사례이다. 세 번째 사례는 1 학년 때 관심군으로 분류되어 3 년 넘게 약물치료를 받은 4 학년 학생이 자신을 ADHD 라고 부르게 된 사례이다.

박미서 상담사는 이 사례들이 모두 같은 질문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사건이 기록된 뒤 아이의 마음은 어디에서 다시 읽히는가, 분류된 뒤 아이는 어떤 절차 안에서 다시 이해되는가. 그는 학교상담법에 세 가지 흐름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첫째, 문제행동 이후 제지와 안전 확보 다음에 곧바로 보고·통보·연계로만 가지 않고 “그 행동은 아이에게 어떤 의미였는가”를 묻는 멈춤과 질문의 절차가 필요하다. 둘째, 검사 결과와 행동 기록은 학생을 규정하는 이름이 아니라 참고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상담 기록은 징계, 민원 대응, 행정 증빙과 분리된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또한 그는 병원 연계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학교의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병원 진료는 일주일에 한 번일 수 있지만, 아이의 학교생활은 매일 계속된다. 따라서 진정한 회복은 의료적 개입 이후에도 학교 안에서 자기 이해와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고 정리하였다.

6-4. 김수정 학부모: 두려움 속 동의를 실질적 동의로 바꾸기

김수정 학부모는 직장맘이자 초등학교 1 학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리에서 학교상담법에 대한 기대를 말했다. 그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언어발달 속도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학병원 진료, 발달센터 치료, 특수반, 장애등록, 바우처 등의 권유를 강하게 받았던 경험을 제시하였다. 부모가 아이의 속도를 기다리고 싶다고 말하면 그것이 “엄마의 욕심” 또는 “치료 시기를 놓치는 방해”처럼 다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밝혔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아이가 자신을 환자, 장애인,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었다. 아이가 자기 자신을 알기도 전에 “나는 장애가 있어서 못 한다”, “나는 병이 있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깎아버리는 일이 가장 두렵다고 말했다. 그래서 아이에게는 병명이나 진단보다 먼저 자기 이름으로 자신을 이해할 기회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리하였다.

김수정 학부모는 학교가 검사, 상담, 외부기관 연계를 제안할 때 부모가 “동의합니다”라고 표시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알고 선택한 동의인지, 아니면 아이가 학교에서 불리해질까 봐 응하는 동의인지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실질적 동의가 가능하려면 검사·상담·연계가 무엇을 하는 절차인지, 어떤 정보가 기록되고 누구에게 공유되며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받아야 한다. 또한 부모와 학생은 질문할 권리, 다른 의견을 말할 권리, 정보 이동에 동의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그는 학부모가 민원인이 아니라 학생 회복의 협력자가 되기 위해 학교상담법이 학부모 상담과 학부모 민원을 구분하고, 아이를 이해하려는 노력 앞에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정보와 절차를 공유하며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6-5. 이수연 변호사: 학생 상담권, 내면 정보 보호, 동의권의 법률 구조

이수연 변호사는 학생 상담권, 내면 정보 보호, 동의권을 학교상담법의 핵심 법률 구조로 제안하였다. 그는 영국 웨일스의 학교상담 제도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학생이 자기 목소리를 낼 권리,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과 조언에 접근할 권리,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과도한 의료화와 시설화를 경계하는 관점을 소개하였다.

그는 “낙인 없이 상담받을 권리”를 헌법상 인격권,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관점에서, “내면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민감정보 보호의 관점에서, “자기 언어로 말할 권리”를 아동의 의견청취권과 자기결정권의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수연 변호사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학교 상담 기록이 우울감, 가족갈등, 충동성, 자살 생각 등 가장 내밀한 정신건강 정보를 포함하므로 “내면 정보” 또는 민감정보로 명시하고, 학생을 위한 목적에서 최소한으로 수집·이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도 최소 범위로 제한하고, 접근 권한을 직무상 필요한 자에게만 부여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질적 동의를 위해 학교의 설명 의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학생과 보호자는 검사 목적과 내용, 수집·기록 범위, 열람·공유 대상, 공유 이후 진행 절차, 거부·철회 가능성과 그 결과에 대해 학생의 연령에 맞는 언어로 설명받아야 한다. 그는 14 세 이상 학생의 명시적 동의, 14 세 미만 학생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와 학생 본인의 설명·의견청취 절차, 동의 거부나 철회로 인한 불이익 금지, 상담 기록의 열람·정정·삭제 요청권을 학교상담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검사 결과가 학생을 위험군으로 고정하거나 외부기관 연계의 자동 근거가 되지 않도록 사용 제한 조항이 필요하며, 비위기 학생에게는 학교상담 우선, 위기 학생에게는 신속 보호가 작동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상담 기록은 상담 외 목적, 생활지도, 징계, 민원 대응, 행정자료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급박한 상황에 대한 예외 기준은 별도로 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6-6. 김미정 원장: 위기 학생 보호와 과잉 병리화의 경계

김미정 원장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입장에서 의료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아이가 적절한 의료를 만나야 한다는 점을 먼저 밝혔다. 동시에 학교에서 충분히 이해받기 전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진단명으로 이해되는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는 학교상담법을 학교가 병원이 아닌 학교임을 다시 상기시키는 법으로 설명하였다. 실제 위기 학생은 신속하게 전문적 보호를 받게 하되, 모든 학생을 진단명부터 붙여 바라보기 전에 아이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상황에서 아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지를 묻는 법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김미정 원장은 즉각 의료기관 또는 전문기관 연계가 필요한 위기 상황을 여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신체적 응급 상황, 학대 피해 의심,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긴급 위험, 현실 검증력의 심각한 손상 의심, 상당한 자살 위험, 반복적 자해의 의학적 위험이다. 이러한 경우 학교는 상담실에서 설득하는 데 머물지 않고 혼자 두지 않기, 위험 물건 분리, 보호자와 학교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필요 시 119 나 응급실 연계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일반적 무기력, 관계 갈등, 학업 실패 후 좌절, 등교 거부, 수업 회피, 진로 혼란, 입시 불안, 가족 기대와의 갈등은 곧바로 질병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학교 안 교육상담과 생활 맥락 이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의사는 병을 보지만 학교는 아이의 생활을 볼 수 있다. 아이가 언제 무너지는지, 누구 앞에서 얼어붙는지, 무엇을 할 때 살아나는지, 어떤 말에 폭발하는지, 어떤 관계에서 다시 돌아오는지는 병원 진료실보다 학교가 더 잘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학교상담법에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의 자동 연계 금지, 비위기 학생 학교상담 우선, 공동 사례회의, 위기 학생 신속 보호, 응급상황 대응, 의료기관 연계 이후 학교 내 사후지원, 교사 보호, 학생 정보보호 조항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6-7. 김혜원 상담사: 문제행동 뒤의 세계와 믿음을 읽는 학교상담

김혜원 상담사는 “괴물의 세계에 혼자 떨어진 아이” 사례를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을 병명과 발달문제로 닫기 전에, 그 행동이 붙잡고 있는 세계와 믿음을 읽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겉으로 보기에 착석이 안 되고, 밥을 먹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공포 게임과 괴물 이야기에 몰입하고, 뒤늦게 공격 행동을 보이는 아이는 자폐 성향, ADHD, 발달 지연, 충동 조절 문제, 공격성으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김혜원 상담사는 아이의 괴물 이야기를 단순한 집착이나 망상으로 보지 않았다. 아이에게 괴물 세계는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의 불안과 긴장을 자기만의 규칙과 공략법으로 예측 가능한 세계로 다시 재창조하는 작업이었다. 화장실 귀신을 피하는 공략, 색깔 순서대로 블록을 쌓는 질서, 괴물 탈을 쓴 것처럼 행동하는 방식은 모두 막연한 불안과 침입감을 다루기 위한 아이의 생존법으로 해석되었다.

그는 아이의 세계를 들어보지 않고 “그런 이야기는 그만해”, “앉아”, “밥 먹어”, “친구에게 그러면 안 돼”만 반복할 때, 아이는 자신의 공략법이 무시당하고 현실에서 더 벌거벗은 채 괴물 앞에서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도움이라는 이름의 절차가 아이의 말보다 체크리스트를 먼저 놓고, 생활 장면보다 검사 결과를 먼저 놓고, 관계보다 연계를 먼저 놓고, 공략법보다 진단명을 먼저 놓을 때, 도움은 아이를 이해 가능한 형태로 개조하는 절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김혜원 상담사는 아이의 기준과 믿음을 “내가 보는 세계가 있다”, “나는 그 세계를 누군가와 같이 보고 싶다”, “내 세계가 공유될 때 나는 현실의 규칙도 받아들일 수 있다”로 읽었다. 실제로 상담자가 아이의 괴물 세계와 공략법을 함께 보고 따라가자, 아이는 밥을 먹고, 억울함을 말로 표현하고, 친구와 사과하고 관계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는 학교상담법이 아이의 공략법을 빼앗는 법이 아니라, 그 공략법을 학교 안에서 쓸 수 있는 언어로 함께 바꾸어 주는 법이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7. 토론회에서 확인된 핵심 쟁점

쟁점	토론에서 확인된 내용	입법적 의미
문제 제기에서 조항화로	1 차 토론회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학교의 병원화 문제를 공론화했다면, 2 차 토론회는 이를 학교상담법의 목적·권리·절차·책임 조항으로 전환하였다.	학교상담법 초안 0.5 판의 구성 체계가 필요하다.
공동 사례회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분리되어 상담실 정보와 교실 장면이 연결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로 제기되었다.	담임교사, 상담교사, 관리자, 필요 시 학부모가 참여하는 공동 사례회의의 요청권·소집 절차·기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담임교사 보호	교사는 학생을 이해하려는 교육적 시도가 민원, 안전사고, 수업 붕괴, 관리자 평가, 책임 문제로 돌아올까 두려워한다.	공동 사례회의와 관리자 보호 절차를 따른 교육적 개입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하고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아야 한다.
상담교사 역할	상담교사가 학생을 상담하지만 교실 상황과 연결되지 못하거나, 검사 결과 처리자·외부기관 연계 담당자로 축소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상담교사의 독립적 전문성, 비밀보장, 담임 자문, 공동 사례회의 참여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쟁점	토론에서 확인된 내용	입법적 의미
기록과 낙인	행동 기록은 필요하지만, 기록이 아이를 규정하는 이름이 되면 상담 이전에 낙인이 생긴다.	검사 결과와 행동 기록은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고, 학생을 진단명·위험군으로 고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 내면 정보 보호	우울감, 자살 생각, 가족 갈등, 충동성, 상담 내용은 학생의 가장 내밀한 정보이다.	내면 정보의 최소 수집, 목적 제한, 접근 권한 제한, 보관·삭제 기준, 제 3자 제공 제한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
실질적 동의	부모와 학생이 “동의합니다”라고 표시하더라도 두려움 속 순응일 수 있다.	설명권, 숙고 기간, 질문권, 거부권, 철회권, 정보 이동 고지, 학생 연령에 맞는 설명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연계 기준	위기 학생은 신속하게 보호해야 하지만, 모든 무기력·산만함·등교거부가 곧바로 질병은 아니다.	위기와 비위기를 구분하고, 비위기 학생은 학교상담 우선, 위기 학생은 즉시 보호와 연계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연계 이후 학교 역할	병원에 보냈다고 해서 학생의 학교생활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다.	의료기관 연계 후에도 교실 복귀, 관계 회복, 기대 조정, 학교 안 사후지원 계획을 의무화해야 한다.
학부모의 지위	학부모는 민원인이 아니라 아이를 오래 보아온 협력자이다.	학부모 상담과 학부모 민원을 구분하고, 학부모를 회복 과정의 협력자로 참여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학생 자기 언어	어떤 학생은 “힘들어요”라고 말하지 않고, 괴물 이야기, 엮드림, 수업 회피, 등교 거부로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다.	학교상담은 학생의 표현을 행동 통제로 닫기 전에 생활 맥락과 자기 언어를 읽는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

8. 학교상담법 조항화 방향

2 차 토론회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학교상담법의 조항 후보를 비교적 명확하게 도출했다는 점이다. 아래 표는 토론 내용에서 도출되는 조항화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조항 후보	핵심 내용	토론 근거
목적 조항	학생이 학교 안에서 낙인 없이 상담받고, 자신의 삶과 마음을 말하며, 상담·기록·연계·사후지원 절차에서 권리를 보호받도록 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한다.	황상민, 이수연 발제
학교상담의 정의	학교상담을 검사·분류·연계가 아니라 학생의 생활 장면, 관계, 기준, 믿음을 읽고 회복과 성장을 설계하는 교육상담 절차로 정의한다.	박미서, 김혜원 발제

조항 후보	핵심 내용	토론 근거
학생 상담권	학생은 연령과 발달 정도에 맞게 비밀이 보장되는 상담과 조언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이수연 발제
학생 자기 언어권	학생은 문제행동의 당사자로만 기록되기 전에 자신의 감정, 두려움, 억울함, 세계를 자기 방식으로 말하고 설명받을 기회를 가진다.	김혜원, 박미서 발제
학생·학부모 설명권	검사, 상담, 기록, 외부기관 연계, 의료기관 연계의 목적·내용·정보 이동·공유 범위·다음 절차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설명한다.	김수정, 이수연 발제
실질적 동의권	형식적 안내가 아니라 숙고와 질문, 거부·철회 가능성이 보장되는 실질적 동의 절차를 마련한다.	김수정, 이수연 발제
내면 정보 보호	정서·상담·가족·관계 정보는 내면 정보 또는 민감정보로 보아 최소 수집, 목적 제한, 접근권한 제한, 보관·삭제 기준을 둔다.	이수연 발제
검사 결과 사용 제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와 행동 기록은 참고 자료일 뿐 진단명, 위험군 고정, 외부기관 자동 연계의 근거가 될 수 없도록 한다.	박미서, 김미정, 이수연 발제
공동 사례회의	담임교사, 상담교사, 관리자, 필요 시 학부모가 학생의 생활 장면과 마음을 함께 읽고 지원계획을 세우는 공식 절차를 마련한다.	조승연, 박미서, 김미정, 김혜원 발제
담임교사 역할과 보호	담임교사는 학생 생활 장면의 핵심 관찰자이며, 공동 사례회의와 관리자 보호 절차를 따른 교육적 개입은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호한다.	조승연 발제
상담교사 권한	상담교사는 검사 처리자나 연계 담당자가 아니라 학생의 내면과 관계를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담임교사를 자문하는 학교상담 주체로 규정한다.	박미서, 이수연 발제
관리자 책임	관리자는 사례회의 시간과 절차, 학부모 공식 소통, 민원 대응, 교원 보호, 학교 차원의 안전 조치를 책임진다.	조승연, 박미서 발제

조항 후보	핵심 내용	토론 근거
위기·비위기 구분	자살 위험, 반복 자해, 학대 의심, 현실 검증력 손상, 생명·신체 긴급 위험 등은 즉시 보호하고, 일반적 무기력·관계갈등·등교거부 등은 학교상담 우선 절차를 적용한다.	김미정 발제
의료기관 연계 기준	의료기관 연계는 자동 절차가 아니라 공동 사례회의, 위기 판단, 학생·학부모 설명과 동의를 거쳐 책임 있게 결정한다. 단, 긴급 위험은 예외 절차를 둔다.	김미정, 이수연 발제
연계 후 사후지원	의료기관 연계 이후에도 학교는 학생의 교실 복귀, 관계 회복, 학습·생활 조정, 자기 이해를 위한 사후지원 계획을 마련한다.	김미정, 박미서 발제
학부모 협력 절차	학부모가 민원인이 아니라 학생 회복의 협력자로 참여하도록 정보 공유, 상담 참여, 의견 제출, 선택권을 보장한다.	김수정 발제
사례 추적과 연수	문제행동 뒤 마음을 읽는 사례를 익명화하여 추적하고, 교사와 상담교사가 공동 사례회의와 생활 장면 해석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연수 체계를 둔다.	조승연, 김혜원 발제

9. 토론회 성과

- 1 차 토론회에서 제기된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학교상담법의 구체적 권리와 절차로 전환하였다.
- 담임교사, 상담교사, 관리자, 학부모, 의료기관의 역할을 분리하면서도 협력하게 만드는 공동 사례회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 학생의 내면 정보와 상담 기록을 보호하면서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공유해야 한다는 긴장을 입법 쟁점으로 정리하였다.
- 검사 결과와 행동 기록이 학생을 진단명이나 위험군으로 고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기록 이후 학생을 다시 만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 실제 위기 학생은 더 빠르게 보호하되, 비위기 학생은 학교 안 상담과 생활 맥락 이해를 우선해야 한다는 의료적 균형 기준을 마련하였다.
- 학부모의 동의가 두려움 속 순응이 아니라 실질적 선택이 되기 위해 설명권, 질문권, 정보 이동 고지,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화하였다.
- WPI 상담의 관점에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억제 대상이 아니라 자기 언어와 삶의 장면으로 읽는 학교상담의 정의를 제안하였다.
- 7 월 8 일 의원실 미팅과 7 월 23 일 후속 토론회를 위한 입법 자료의 기초를 확보하였다.

10. 시민네트워크 활동실적으로서의 의미

이번 2 차 공개토론회는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네트워크가 1 차 토론회 이후 한 달 동안 제기해 온 문제의식을 입법 준비 단계로 진전시킨 활동으로 기록될 수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강연이나 내부 회의가 아니라, 교실 현장, 학교상담 현장, 학부모, 법률, 의학, WPI 상담의 관점이 한 자리에서 학교상담법의 조항 후보를 논의한 공개 토론회라는 점에서 시민입법 프로젝트의 핵심 활동실적이 된다.

또한 이번 토론회는 향후 학교상담법 초안 0.5 판, 입법 쟁점표, 의원실 제출용 제안자료, 교육부 공개질의서, 현장 사례집, 시민서명운동 설명자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준비자료의 근거 문서로 활용될 수 있다.

11. 후속 과제 및 산출물

후속 과제	구체 내용	산출물
학교상담법 초안 0.5 판 작성	2 차 토론회에서 도출된 목적, 정의, 권리, 정보보호, 공동 사례회의, 의료기관 연계 기준, 사후지원 조항을 조문 형식으로 정리한다.	학교상담법 초안 0.5 판
입법 쟁점표 작성	학교상담법과 학교보건법, 학생맞춤 통합지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아동권리 관점의 쟁점을 비교 정리한다.	입법 쟁점표
7 월 8 일 의원실 미팅 자료	의원실에서 바로 검토할 수 있도록 문제의식, 현장사례, 조항 후보, 교육부 질의사항을 3 쪽 내외로 정리한다.	의원실 제출용 제안자료
교육부 공개질의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법적 근거, 학생 동의권, 정보보호, 외부기관 연계 기준, 상담교사 역할 축소 문제를 질의한다.	교육부 공개질의서
현장 사례 자료집	유달리 사례, 행동 기록 이후 낙인 사례, 학부모 동의 경험, 괴물 세계 사례를 익명화하여 입법 근거 사례로 정리한다.	현장 사례 요약집
3 차 토론회 기획	학교상담법 초안의 조항별 실효성, 학교 현장 적용 가능성, 법 시행 시 예상 효과를 검토한다.	7 월 23 일 3 차 토론회 기획안
증빙자료 정리	녹취록, 발제문, 패널 요청서, 결과보고서, 토론회 홍보물, 후속 산출물을 활동실적으로 보관한다.	시민네트워크 증빙자료 폴더

12. 결과보고용 핵심 문장

2026년 6월 23일 진행된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시민네트워크 2 차 공개토론회는 1 차 토론회에서 제기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전면 재검토와 학교의 병원화 문제를 학교상담법의 구체적 조항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학교상담법이 상담 책임을 담임교사에게 더 떠넘기는 법이 아니라, 학생의 삶을 읽는 담임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보호하고,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회복하며, 관리자 책임과 공동 사례회의를 통해 학교 공동체가 함께 학생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법이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참여자들은 학교상담법에 학생 상담권, 자기 언어로 말할 권리, 내면 정보 보호, 실질적 동의권, 검사 결과 사용 제한, 공동 사례회의, 담임교사 보호, 상담교사 역할 보장, 의료기관 연계 기준, 연계 이후 학교 안 사후지원, 학부모 협력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을 선별·분류하는 학교에서 학생의 삶을 읽고 성장시키는 학교로 전환하기 위한 시민입법 활동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13. 증빙자료 목록

- 2026년 5월 22일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1 차 온라인 전문가 토론회 결과보고서
- 2026년 6월 23일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학교상담법 제정을 위한 2 차 공개토론회 녹취록 (137분 12초)
- 2026년 6월 23일 2 차 토론회 패널 참여 요청서
- 2 차 토론회 패널별 발언 요약 및 조항화 메모
- 후속 학교상담법 초안 0.5 판 및 입법 쟁점표
- 7월 8일 의원실 제출용 제안자료와 교육부 공개질의서

14. 최종 정리

이번 2 차 토론회의 최종 메시지는 분명하다. 학교는 병원이 아니다. 그러나 학교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의 원칙과 절차는 더 분명해야 한다. 학생의 행동은 곧바로 병명으로 달리기 전에, 그 행동이 어떤 생활 장면에서 생겼는지, 무엇을 말하지 못해 행동으로 나온 것인지, 학교 안에서 어떤 관계 회복과 성장이 가능한지 먼저 읽어야 한다.

학교상담법은 의료를 막는 법이 아니다. 실제 위기 학생은 더 빠르고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 동시에 모든 흔들림을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모든 어려움을 병원으로 넘기는 방식은 학교의 교육적 책임을 약화시킨다. 학교상담법은 담임교사, 상담교사, 관리자, 학부모, 의료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학생을 한 사람의 삶으로 다시 만나는 절차를 세우는 법이어야 한다.

따라서 2 차 토론회의 성과는 학교상담법의 필요성을 다시 주장한 데 있지 않다. 성과는 이제 무엇을 법으로 세울 것인가가 비교적 분명해졌다는 데 있다. 학생 상담권, 내면 정보 보호, 실질적 동의권, 공동 사례회의, 교원 보호, 의료기관 연계 기준, 연계 후 사후지원이 바로 그 핵심 조항이다. 이 조항들이 실제 학교 현장에 작동할 때, 학교는 학생을 선별·분류하는 공간에서 학생의 삶을 읽고 성장시키는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다.